

# 중소형발전소법

2007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06호로 채택

## 제1장 중소기업발전소법의 기본

**제1조(중소형발전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소기업발전소법은 중소기업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전력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중소형발전소의 정의)** 중소기업발전소는 20,000kw까지의 발전능력을 가진 발전소이다. 중소기업발전소에는 수력, 화력, 조수력, 풍력 같은 여러가지 동력 자원에 의거하는 발전소가 속한다.

**제3조(중소형발전소의 건설원칙)** 중소기업발전소건설을 다그치는 것은 나라의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중소기업발전소건설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리고 내부원천을 적극 동원 리용하여 중소기업발전소를 경제적 실리에 맞게 전군중적운동으로 건설하도록 한다.

**제4조(중소형발전소의 운영원칙)** 중소기업발전소의 운영은 발전설비의 가동률을 보장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중소기업발전소의 운영체계를 바로 세우고 설비관리, 기술관리사업을 짜고들어 그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한다.

**제5조(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원칙)** 중소기업발전소의 전력리용을 바로 하는 것은 전력손실과 낭비를 없애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이다. 국가는 중소기업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6조(과학연구성과의 도입원칙)** 국가는 중소기업발전소의 전력생산과 리용효률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그 성과를 중소기업발전소운영에 적극 받아들여도록 한다.

**제7조(전기절약, 전력시설물 보호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생산된 전기를 절약하며 중소기업발전소의 전력시설물을 적극 보호하도록 한다.

## 제2장 중소기업발전소의 건설

**제8조(중소형발전소건설의 기본요구)** 중소형발전소의 건설은 나라의 전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를 계절적 영향을 적게 받는 위치에 계획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계획의 작성)** 중소형발전소의 건설계획작성은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전력수요와 로력, 자재, 설비조건 같은 것을 고려하여 중소형발전소건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과제의 제출과 검토)**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과제를 작성한 다음 대상의 규모에 따라 국가계획기관 또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은 기술과제를 30일 안으로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건설설계의 작성)** 중소형발전소건설의 설계작성은 전력설계기관이 한다. 전력설계기관은 측량, 지질조사, 위치선정 같은 것을 정확히 하며 경제적효과성을 타산하여 합리적인 설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건설설계의 심의, 승인)** 중소형발전소건설설계에 대한 심의와 승인은 국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전력설계기관은 작성한 설계안을 대상의 규모에 따라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 또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 국가건설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건설계획의 맞물림)** 국가계획기관은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에 중소형발전소건설계획을 정확히 맞물려 주어야 한다. 건설계획에 맞물리지 않은 대상은 시공할 수 없다.

**제14조(시공계약)**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건설계획에 따라 시공계약을 맺어야 한다. 맺은 시공계약은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제15조(시공공정별 검사)**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검사원을 두고 시공의 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질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공정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

**제16조(조업기일의 보장)**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건설을 설계와 표준공법의 요구대로 하며 조업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설

계로 중소형발전소를 시공하거나 설계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7조(실리있는 중소형수력발전소의 건설)**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리가 많은 중소형수력발전소를 먼저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력자원을 정확히 조사하고 수력지점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제18조(중소형화력, 풍력, 조수력발전소의 건설)**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정에 맞게 중소형화력, 풍력, 조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야 한다. 중소형화력, 풍력, 조수력발전소의 건설을 기후, 지리적조건 같은 것을 타산하여 전력과 열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고 경제적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9조(발전설비의 규격화, 표준화, 계열화)**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설비를 규격화, 표준화하고 생산을 계열화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설비를 자체로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 규격대로 생산하며 앞선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발전설비를 부단히 갱신하여야 한다.

**제20조(중소형발전소건설의 종합검사, 준공검사)**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건설이 완공되면 종합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는 대상의 규모에 따라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 또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이, 준공검사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종합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중소형발전소의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다.

### 제3장 중소형발전소적용

**제21조(중소형발전소의 운영)** 중소형발전소의 운영을 바로하는 것은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설비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전력생산을 늘여야 한다.

**제22조(전력생산계획의 시달)**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발전능력에 따르는 전력생산계획을 작성하여 국가계획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중소형발전소의 발전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전력생산계획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23조(전력생산계획의 수행과 변경)**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받은 전력생산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전력생산계획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국가계획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전력생산의 정상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락차의 변화에 맞게 발전 체계를 부단히 변화시켜 수차와 발전기의 효율을 높이며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

**제25조(중소형수력발전소의 물관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언제, 취수구, 수로 같은 시설을 제때에 정비하고 물 관리를 바로 하여 높은 수위와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도중취수구를 신설, 확장하여 더 많은 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전력시설의 보호)**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수력발전소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거나 보호시설물을 만들어 가뭄, 홍수, 돌사태 같은 피해로부터 전력시설을 보호하여야 한다. 겨울에는 물 뽑기 같은 추위에 의한 피해막이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7조(발전효율의 제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설비를 정상적으로 정비 보장하여 타빈과 풍차, 수차의 발전효율을 높여야 한다. 효율이 낮은 설비와 기술공정은 개조, 갱신하여야 한다.

**제28조(설비의 점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설비점검을 정상적으로 조직하며 설비의 불량개소를 찾아 등록하고 퇴치하여야 한다. 설비 점검으로 퇴치할 수 없는 불량개소는 보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설비의 보수)** 중소형발전소의 설비보수를 소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수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보수주기를 지키며 발전설비의 가동률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0조(설비의 폐기, 이관, 인수)** 중소형발전소의 설비에 대한 폐기, 이관, 인수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재산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재산감독기관은 해당 승인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검토처리 하여야 한다.

**제31조(전력생산실적자료의 장악)**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은 중소형발전소의 전력생산실적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그것을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은 중소형발전소의 전력생산실적을 국가계획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

**제32조(중소형발전소전력리용의 기본요구)**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은 생산된 전력의 리용효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자체의 전력수요를 보장하는데 리용한다. 이 경우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량 만큼 국가전력통계의 전력을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33조(전력계통의 연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소비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중소형발전소의 전력계통을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고 송배전기관에 의뢰하여 가까이 있는 국가전력계통에 연결하고 전력을 리용할 수 있다.

**제34조(여러 중소형발전소의 전력계통구성)** 한 지역에 있는 여러개의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하나의 전력계통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5조(남는 전력의 공급)** 중소형발전소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리용하고 남는 전력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하거나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전력계통에 넣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력시설공사를 전력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36조(요금의 지불)** 전력을 공급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요금지불은 측정한 전력공급량에 따른다.

**제37조(국가전력계통의 전력리용신청)**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갈수기 또는 기타 사유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부족할 경우 국가전력계통의 전력을 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신청문건을 송배전기관에 내야 한다. 송배전기관은 승인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 주어야 한다.

**제38조(국가전력계통의 전력차단)** 국가전력계통이 전력을 립시로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에서 전력을 다시 정상적으로 생산할 경우 송배전기관에 의뢰하여 국가전력계통의 전력공급을 차단하여야 한다. 전력을 2중으로 공급받은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9조(시, 군이 건설한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 시(구역), 군자체로 건설한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은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은 전력공급대상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40조(전력리용효율의 제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의 리용효율을 높여 전력의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어야 한다. 송배전체계를 정비하고 무효전력, 과대용량 같은 것에 의한 전기량비현상을 없애야 한다.

### 제5장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1조(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중소형발전소건설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2조(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은 중소형발전소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3조(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의 지도)**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은 관할지역 기관, 기업소, 단체의 중소형발전소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합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로력, 설비, 자재, 자금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 쓸수 없다.

**제45조(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중소형발전소사업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6조(전력생산과 리용의 통제)**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현대적인 계량수단을 리용하여 중소형발전소의 전력생산과 리용을 통제하여야 한다. 계량수단은 해당감독통제기관이 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벌금적용, 손해보상)** 벌금을 물리거나 손해보상을 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생산한 전력을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2. 발전능력대로 전력을 생산하지 않았을 경우
3. 로력, 자재, 자금을 낭비하여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였을 경우
4. 건설한 중소형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였을 경우
5. 전력을 낭비하였거나 전력료금을 물지 않았을 경우
6. 발전설비를 분실, 파손시켰을 경우

**제48조(중지)** 중소형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전력리용을 중지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승인되지 않은 설계로 건설할 경우
2. 설계대로 건설하지 않을 경우
3. 종합검사와 준공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하였을 경우
4. 승인없이 남은 전력을 다른 목적에 리용하였을 경우
5. 전력을 초과하여 리용하였을 경우

**제49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중소형발전소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